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2023. 3. 27.

行 政 委 員 會

專門委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116호로 2023년 3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·유치기관 등록 업무 이양에 따른 기관명 변경(안 제2조)

나.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2조, 안 제10조의2, 안 제14조)

다.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호선에서 당연직으로 변경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.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.

라. 입법예고(2023.2.2.~2.22./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은**

상위법인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**주요 내용을 살펴보면**

- **안 제2조(정의)**에서는 상위법 개정(시행. 2021.1.1.)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항임.
- **안 제6조(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)**는 의료관광협의회의 위원장을 현행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에서 부구청장이 하도록 명시함.

※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27개 지자체 중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24개 지자체로 전체의 89%를 차지함.

(해당 사업을 실시 중인 서울시 9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규정함.)

- **안 제2조(정의), 안 제10조의2(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·운영) 및 안 제14조(의료관광 활성화 지원)**는 상위법 개정(시행. 2022.12.22.)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“유치업자”를 “유치사업자”로 변경한 조항임.

○ **검토 결과**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의료관광협의회의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의료관광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 법적 적합성을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)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
1.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. 다만,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.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

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
3.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. <신설 2021. 12. 21.>

1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2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4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. <신설 2021. 12. 21.>

⑤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(이하 “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”이라 한다)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(이하 “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”라 한다)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, 2021. 12. 21.>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21.>

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1.>

⑧ 제1항,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21.>